

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

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



어선어업

▶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되나요?

»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.

1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, 2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·이행되어 있지 않을 때 처벌받습니다.(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)

1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

우리 업종에서 실제 발생한 사고사례를 확인하고 같은 사고가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.

▶ 어선어업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(사망사고) 사례는 무엇인가요?

» 어선어업에서 최근 5년('18~'22년)간 전체 255명의 사고사망(실종)자가 발생(해양 안전사고 통계, 해양수산부)
: 해상추락 89, 나홀로 조업 중 사망·실종 38, 맞음 36, 끼임 34, 질식·부딪힘 23, 목격자 없는 사망·실종 23, 기타 12

해상추락

'22.2. 어선에서 작업 중
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



사고를 예방하려면?

- 통로에 어구, 로프 등 장애물 적치 금지
- 투망 중 주변 어구, 로프 등 주의 철저
- 기상악화 시 갑판에서 작업 자제
- 숙련된 선원의 지시에 따라 작업 실시
- 작업 전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
- 작업 장소에 구멍을 위한 배 또는 구멍 장구 비치

맞음

'22.3. 어선에서 작업 중
줄에 맞아 사망



사고를 예방하려면?

- 장력이 걸려있는 어구, 줄 등으로부터 안전거리 확보
- 주기관 사용 전 로프 주변 선원 확인
- 양망 중 갑작스런 주기관 사용 금지
- 조업 전 어구, 줄 등 마모 상태 점검
- 개인보호장구 착용

끼임

'22.10. 어선에서 양망 작업 중
양망기에 끼여 사망



사고를 예방하려면?

-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
- 회전방향 변경 전 작업선원에게 미리 고지
- 양망기 비상정지 방법 숙지 필수
- 양망기 정지 확인 후 추가 그물작업 실시
- 작업 중 양망기와 안전거리 유지

※ 해당 사례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사례 위주로 작성(경미한 부상 사례는 제외)

이것만은 기본!

- 1 갑판, 어창 등 어선의 작업공간을 수시로 정리정돈하세요.
- 2 조업 전 안전사고 위험작업과 준수(주의)사항을 어선원들에게 알려주세요.
- 3 위험한 곳에는 꼭 **어선안전보건표지**를 부착하세요.
- 4 어선원을 직접 지휘·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(선장, 기관장 등)을 **어선관리감독자로 지정**하여, 우리 어선의 안전보건관리 상태를 체크하세요.
- 5 항해·조업 시 **구멍조끼**를 꼭 착용하세요.



「중대재해처벌법」 관련 자료 안내
(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누리집)



연근해어업 업종별
안전보건 표준매뉴얼
(수협중앙회 누리집)

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준수하여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요!

※ 동 내용은 중소기업 이해를 돕기 위해 간소화하여 작성한 자료이며, 상세한 법적의무사항은 「어선안전조업 관련 법령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「중대재해처벌법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고용노동부



해양수산부

산업재해예방
안전보건공단
KOREA OCCUPATIONAL SAFETY & HEALTH AGENCY



수협중앙회

「중대재해처벌법」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 사업주 핵심 의무사항(어선어업)

2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것

- ▶ 「중대재해처벌법」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 의무사항 총 15가지 중 **핵심 의무사항을 안내**하니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**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!!**
- ▶ 안전보건관리체계란?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·이행하고,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.
- ▶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아래 핵심 의무사항을 **최소 반기 1회는 체크해보세요!!**

핵심 의무사항 하나!

▶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여 선내 모든 어선원들이 알 수 있도록 알립니다.

- ▶ **예시** ← 아래는 예시임에 따라 사업장 실정에 맞게 수립 가능
(방침) “○○호(수산)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, 어선원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.”
(목표) “매월 1회 어구 및 기계·설비에 대한 안전상태 점검, “출항 전 안전사고 위험작업 및 준수(주의)사항 알리기” 등 (공유·전파) 어선원 교육 등을 통해 수시로 사업주의 의지를 알리고, 선박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

우리 사업장은?	
예	아니오
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
핵심 의무사항 둘!

▶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지정합니다.

- 어선소유자는 어선의 조업과 항행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어선원을 직접 지휘·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(선장, 기관장 등)을 어선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

우리 사업장은?	
예	아니오
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
핵심 의무사항 셋!

▶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(비용)을 사용합니다.

- 여력이 있는 범위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안전 예산(비용)을 편성하여 지출내역을 별도로 관리하면 됩니다.
- 사전에 지출할 계획이 없었더라도 안전용품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면 됩니다.
- ▶ **예시** 구멍조끼, 구멍의 등 개인보호구 및 소화기 구입, 구멍정·구멍항 등 구멍장비 구비, 어선안전보건표지 설치(위험장소, 사고예방 경고 등), 어구·어창 등 보수·정비·교체, 양망기·양승기 등 어로설비 및 기계류의 방호장치 설치·보강,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 보수 비용 등

우리 사업장은?	
예	아니오
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
핵심 의무사항 넷!

▶ 우리 사업장의 유해·위험요인을 찾아서 개선하는 활동(위험성평가)을 합니다.

- 안전사고 사례나 어구 및 기계·설비 점검사항 등을 참고하여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개선하는 등 작업 환경에 맞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됩니다.
- 위험성평가 방법, 서식 등은 위험성평가시스템(오른쪽 QR 참조)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▶ **예시** 선박 내 유해·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과정에 근로자(외국인근로자 포함) 의견을 듣고, 개선 및 주의사항을 출항 전 안전사고 위험작업 및 준수(주의)사항 안내 시, 교육 등을 통해 주지시키고, 선박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
- ▶ **유해 위험요인 예시**
 - ⊙ 어구 투망 작업 중 어구 줄이 몸에 감겨 해상으로 떨어짐 위험
 - ⊙ 양망 작업 중 양망기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점검·정비하거나, 롤러·로프·어망 부근에서 작업 시 감김·끼임 위험
 - ⊙ 수명이 다된 어구나 줄이 끊어져 맞음 위험
 - ⊙ 어구상자 등 운반 시 신체 흔들림, 신체 바닥 그물 등에 걸려 해상으로 떨어짐 위험
 - ⊙ 승선을 위해 선박으로 뛰어내리거나 어획물 하역 중 갑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위험
 - ⊙ 크레인·지게차를 이용한 어획물 운반 시 주변 어선원 부딪힘·맞음 위험



위험성평가 관련 자료 안내

우리 사업장은?	
예	아니오
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
핵심 의무사항 다섯!

▶ 산업재해에 대비하여 비상매뉴얼을 만들고, 산업재해가 있었던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합니다.

- ▶ **예시** 어선원 재해 발생 - 작업 중단 및 피해자 응급조치 - 사고상황 전파(필요시 관계기관 지원요청) - 사고보고서 작성 -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- 어선원 교육·훈련 등

우리 사업장은?	
예	아니오
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